

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14호
의결년월일	99. 10. 4 (제73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9. 20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실에 맞게 직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부서를 직제에 맞게 재조정함(안 제3조)

• 위원회 소관사무 조정

- 기획재정위원회

공보실, 감사실, 읍무즈만, 행정지원국(회계과), 기획세무국, 경제통상국, 농산지원사업소

- 행정복지위원회

행정지원국(총무과, 체육청소년과, 정보관리과), 복지환경국, 보건소, 맑은물푸른숲사업소(녹지공원과), 시립도서관

- 건설교통위원회

건설교통국, 맑은물푸른숲사업소(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), 청소사업소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, 하수정화사업소

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획재정위원회 : 공보실, 감사실, 읍무즈만, 행정지원국(회계과), 기획세무국, 경제통상국,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
3. 행정복지위원회 : 행정지원국(총무과, 체육청소년과, 정보관리과), 복지환경국, 사업소 중 보건소, 맑은물푸른숲사업소(녹지공원과),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
4. 건설교통위원회 : 건설교통국, 사업소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(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), 청소사업소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,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획재정위원회 : <u>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, 행정지원국(회계과), 지역경제국, 세무국,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행정복지위원회 : <u>행정지원국(총무과, 민방위 재난관리과, 정보통신과), 복지환경국, 사업소 중 보건소, 녹지공원관리사업소,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건설교통위원회 : <u>건설교통국,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, 청소사업소, 하수정화사업소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획재정위원회 : <u>공보실, 감사실, 읍부즈만, 행정지원국(회계과), 기획세무국, 경제통상국,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행정복지위원회 : <u>행정지원국(총무과, 체육청소년과, 정보관리과), 복지환경국, 사업소 중 보건소, 맑은물푸른숲사업소(녹지공원과),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건설교통위원회 : <u>건설교통국, 사업소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(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), 청소사업소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차량등록사업소,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